홍콩(Hong Kong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○ 최초법 및 현행법 : 1971년 (사회부조법); 1973년 (기초노령 및 장애수당); 1988년(기초 고율 장애수당); 1993년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보장 수당); 1995년(의무적립기금제도), 2000년 시행

2 제도형태

○ 기초제도, 의무적 직업연금 및 사회부조제도

※ 홍콩(중국)에서의 의무적립기금제도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의무직업기금제도이며,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적립기금제도와 혼동되어서는 안됨

3 적용대상

○ 기초제도(노령 및 장애수당) : 홍콩(중국) 거주자

○ 의무직역연금(적립기금) : 최소 60일(요식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더 짧은 기간) 동안 계약되어 있는 근로자 및 거의 모든 분야의 자영자

- 제외대상 : 자영행상; 가사근로자; 공무원 또는 교사와 같은 법정연금이나 적립기금제도 가입자; 면제증명서를 허가받은 직역퇴직제도의 가입자; 홍콩 체류기간 13개월 미만 또는 타국 퇴직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

○ 사회부조(종합 사회보장부조) : 홍콩(중국) 거주자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

- 기초제도(노령 및 장애수당) : 없음
- 의무직역연금(적립기금) : 월 소득(급여, 휴가수당, 수수료, 퇴직금, 보너스, 주택수당 포함)의 5%. 임의보험료 가산 가능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HK$7,100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HK$30,000
- 사회부조(종합 사회보장부조) : 없음

○ 자영자

- 기초제도(노령 및 장애수당) : 없음

- 의무직역연금(적립기금) : 월 또는 연 소득의 최소 5%. 임의보험료 가산 가능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HK$7,100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HK$30,000
- 사회부조(종합 사회보장부조) : 없음

○ 사용자
- 기초제도(노령 및 장애수당) : 없음
- 의무직역급여(적립기금) : 월 지불급료총액(급여, 휴가수당, 수수료, 퇴직금, 보너스, 주택수당)의 최저 5%. 임의보험료 가산 가능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HK$7,100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HK$30,000
- 사회부조(종합 사회보장부조) : 없음

○ 정부
- 기초제도(노령 및 장애수당) : 총비용
- 의무직역급여(적립기금) : 없음
- 사회부조(종합 사회보장부조) : 총비용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- 노령수당(노령생활수당, 기초제도, 자산 및 소득조사) : 65세인 연금청구 직전 1년의 지속적 거주를 포함한 홍콩(중국)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자
  - 자산 및 소득조사 : 월 소득이 미혼인 경우 HK$7,820, 기혼인 경우 HK$12,7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 또한, 자산이 정상 수당은 미혼인 경우 HK$334,000, 기혼인 경우 HK$506,000를; 고액 수당은 미혼인 경우 HK$146,000, 기혼인 경우 HK$221,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노령수당(기초제도, 자산 및 소득조사 이루어지지 않음) : 70세인 연금청구 직전 1년의 지속적 거주를 포함한 홍콩(중국)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자
- 노령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65세인 자
  - 조기해약 : 영구적 퇴직이라면 60세; 영구적으로 해외 이주하거나, 계좌 잔고가 HK$5,000 이하이거나, 기대수명이 1년 이하인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시 연령무관
- 노령수당(종합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홍콩(중국) 거주기간이 최소 1년인 60세 국내거주자(1년의 거주기간이 지속적이거나 연금청구 직전이 아니어도 됨)
  - 자산조사 : 수급자가 혼자 살고 있다면, 자산이 HK$47,500을 초과해서는 안 됨; 수급자가 한 명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, 자산은 가족 구성원에 근거하여 변동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수당(기초제도) : 연금청구 직전 1년의 지속적 거주를 포함하여 홍콩(중국)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자, 앞의 거주 조건은 18세 이하의 수급자에게는 적용 제외
  - 정상수당 : 수입 능력의 100% 손실 또는 심각한 청각 장애가 있음으로 진단되어야 함
  - 고액수당 : 수입 능력의 100% 손실 또는 심각한 청각 장애가 있으며,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다고 진단 받고, 정부 보조 기숙사, 병원, 또는 기숙학교를 지원 받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
- 장애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완전한 및 영구적인 직업 불능으로 판단되어야 함
  - 고용이 중단되어야 함
  - 등록된 의료전문가가 작업 능력의 상실을 판단
- 장애수당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완전한(100%) 장애로 판단되어야 하며, 최소 1년의 홍콩(중국)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. (1년의 거주기간이 지속적인 거주이거나 연금청구 직전 1년이 아니어도 됨; 거주 조건은 18세 이하의 수급자에게는 적용 제외)
  - 부분장애 : 최소 50%의 장애 등급, 50% 이상 100% 미만의 수입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급
  - 자산조사 : 수급자가 혼자 살고 있다면, 자산이 HK$47,500을 초과해서는 안 됨; 피보험자가 한 명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에 근거하여 변동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됨
  - 등록된 의료전문가가 작업 능력의 상실을 판단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기금가입자가 전체 계좌 잔고를 인출하기 전 사망 시, 지명유족에게 지급
- 장제비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사회보장부조 급여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.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
  - 자산조사 : 수급자가 혼자 살고 있다면, 자산이 HK$47,500을 초과해서는 안 됨; 수급자가 한 명 이상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에 근거하여 변동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수당(노령생활수당(OALA), 기초제도, 자산 및 소득조사) : 월 HK$2,600(정상수당) 또는 HK$3,485(고액수당) 지급
- 노령수당(기초제도, 자산 및 소득조사 이루어지지 않음) : 월 HK$1,345 지급
- 노령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가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
- 노령수당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수급자의 건강과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혼자 사는 수급자에게는 월 HK$3,485~HK$5,930,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수급자에게는 월 HK$3,285~KH$5,440.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별도 지원금 지급 가능.

○ 장애급여

- 장애수당(기초제도) : 정상수당으로 월 HK$1,720 혹은 고액수당으로 월 HK$3,440 지급
- 장애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장애수당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수급자의 나이, 판단된 장애정도,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혼자 사는 자에게는 월 HK$3,485~HK$6.355,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월 HK$3,285~HK$5,870.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별도 지원금 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의무직역연금, 적립기금) : 계좌 잔고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장제비(종합 사회보장부조, 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장례비로 최대 HK$15,130까지의 일시금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복지부(Social Welfare Department)

- 기초제도 연금과 사회보장부조제도 관리
- https://www.swd.gov.hk

○ 의무적립금고청 (MPFA: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)

- 상임이사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무직역연금을 전반적으로 감독
- 적립기금 허가, 수탁자의 기금 운용 감독
- https://www. mpfa.org.hk

○ 적립기금 신탁 관리자들은 의무직역연금을 운용하고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